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3
----------	------

발의연월일 : 2024. 8. 8.

발 의 자 : 서미화 · 박정현 · 이연희
안규백 · 이기현 · 조계원
조 국 · 허 영 · 조인철
오세희 · 박해철 · 복기왕
정일영 · 김원이 · 박수현
이병진 · 정준호 · 황정아
김성환 · 박희승 · 박지혜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
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도
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
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
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② (생 략) <u><신 설></u></p>	<p>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 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 를 하여야 한다.</u></p>